

에코델타시티 PRUGIO Lynn

| 주택형별 대상세대 |

주택형	84A (84A1,A2,A3,A4)	84B	93	95T1	95T2	99	103	110T
대상세대	35	8	9	4	1	21	3	2

|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|

구분		배정 세대수
공급대상	대상 및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민등록표상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 포함) 이상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
	당첨자 선정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당첨자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경쟁이 있을 경우,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② 경쟁이 있는 경우 "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"(다음페이지 참조)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 선발 ③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나.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	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유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이어야 함 -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 -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 -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-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하며, 배점기준표의 3세대 구성 및 무주택기간 판단시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- 이혼, 재혼가정의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 자녀는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-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자녀 수로 인정 -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-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
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에코델타시티 PRUGIO Lynn

|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|

평점요소		총 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	기준	점수	
①	미성년 자녀 수	40점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- 태아, 입양자녀, 전혼 자녀 포함
	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	미성년 자녀 3명	30	
②	영유아 자녀 수	15점	영유아 3명 이상	15	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- 태아, 입양자녀, 전혼 자녀 포함
			영유아 2명	10	
			영유아 1명	5	
③	세대 구성	5점	3세대 이상	5	※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※ 주택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		한부모 가족	5	
④	무주택기간	20점	10년 이상	20	※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-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 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,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기간을 산정
	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⑤	해당 시·도 거주기간	15점	10년 이상	15	※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산정 ※ 시는 광역시·특별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
	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⑥	입주자저축 가입기간	5점	10년 이상	5	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함
계		100점			-

- ①, ②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
- ③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
- ③, ④ :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
- ④, ⑤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
- ⑥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
※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
※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

※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·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및 관련 법령에 따름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
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